

# 目

# 次

1. 特別消費稅를 目的稅로 轉換하려는 政府方針  
撤回促求建議案————— 17
  
  2. 骨材(모래)需給및河川骨材(모래)採取許可登  
錄에關한 陳情書(質疑書)處理結果 —— 24
  
  3. '93郡政主要事業處理意見및向後計劃—— 29
- ※ 第15回 平昌郡議會(臨時會) 期間중 '92 ~  
'93 郡政主要事業場 現地確認結果에 대한  
平昌郡의 處理計劃임.

# 건의 의 안

의 안 번 호	120
------------	-----

발의년월일: 1993. 7. .

발 의 자: 박용태의원 외 5인

## 1. 주 문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휘발유와 경유 및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등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지원 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에서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국제공항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재정개혁부문신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 6만군민은 이를 철회해달라는 촉구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재원 부족으로 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이양과 지방재정 교부금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처사는 중앙집권적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지방자치제 실시가 허울뿐이라고 평가 절하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적세란 세수입을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으로써 지방재정으로 쓰이는 휘발유, 경유, 승용차등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도로, 철도

건설등 특별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거두어들이는 목적세로 전환, 중앙 정부의 재원으로 독점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며,

특히, 목적세로 돌려 마련한 재원을 특정 지역인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건설등에 집중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방자치 정신을 크게 역행하는 것이기에 우리국민은 더욱 반대하는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되었을 경우 내국세에서 제외되어 내국세의 13.2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 지원비는 2,987억원이 줄어들게 되고, 평창군의 경우 93년도 일반회계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예산 409억1,700만원의 43%수준인 175억6,100만원이며,

유류관련 소비세가 목적세로 될 경우 13억원 정도의 재원이 줄어들게 되어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취약한 평창군의 경우 부자재원 확보에 상당한 고초를 겪을 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은 물론 지역개발 사업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평창지역을 비롯한 강원도의 경우 낙후된 지역개발의 면모를 일신케 하기 위해 특별법제정으로 오히려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함에도 이처럼 교부세가 대폭줄어들면 강원도는 버림받는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년이 지난 지금,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보다 국·공채 발행, 세율조정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간접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부족한 지방재정을 돕기 위해 교부되는 특별소비세는 존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중앙정부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줄것을 6만 평창군민의 뜻을 모아 평창군의회 전체의원은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구성과 새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지역발전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각종 지역현안사업 해결요구는 물론 자기몫을 찾겠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수용하는 데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며,

특히,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각종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도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지방재정 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이며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등 국가지원이 더욱 확대되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기획원에서는 지난해에 추진하다가 지방의회와 각계각층의 반발로 무산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새로운 세목의 신설없이 오히려 확대지원하여야 할 지방교부세 재원의 잠식을 가져오는 목적세 전환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경제기획원의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93당초예산 기준으로 볼때,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7.44%나 줄어들게 되어, 전국적으로는 5,644억원 (지방교부세2,987억원, 교육교부세2,657억원) 우리 도는 365억원 (도97억원, 시군268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평창군은 13억여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43%나 되는 우리 군과 같이 재정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가 더욱 큰 영향을 받게되므로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은 정부의 지방자치실현에 역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발상으로 사퇴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실정을 무시하고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가져오는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기에 6만 평창군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코자 하는것임.

## 建 議 文

只今까지 地方財政의 主要財源인 地方交付稅는 揮發油와 輕油및 乘用車에 對한 特別消費稅等 內國稅 總額의 13.27%를 財源으로 하여 地方自治團體에 交付. 支援함으로써 地方財政에 寄與하여 왔으나, 中央政府에서 京釜高速電鐵 영종도 新空港等 大規模 社會間接 資本 施設의 投資財源을 마련한다는 理由로 特別消費稅를 目的稅로 轉換한다는 原則하에 『財政改革部門新經濟5個年計劃』을 發表하고 推進중이라는 衝擊的인 사실에, 우리 6萬郡民은 이를 撤回해달라는 促求 建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地方自治時代를맞아 가뜩이나 地方自治團體들이 自體財源 不足으로 投資費 確保에 어려움이 있어 國稅의 果敢한 地方稅 移讓과 地方財政 交付金의 擴充이 切實한 狀況인데도 오히려 이를 逆行하는 處事는 中央執權的인 舊態를 벗어나지 못한 地方自治制 實施가 허울뿐이라고 評價 切下될 憂慮가 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目的稅란 稅收入을 特定한 目的에만 使用하기爲해 거두는 稅金으로써 地方財政으로 쓰이는 揮發油, 輕油, 乘用車等 油類關聯 特別消費稅를 道路, 鐵道 建設等 特別한 目的에만 使用하기爲해 거두어들이는 目的稅로 轉換, 中央 政府의 財源으로 獨占 使用하겠다는 발상 自體가 天不當 萬不當한 것이며,

특히, 目的稅로 돌려 마련한 財源을 特定 地域인 京釜高速 電鐵, 영종도 新空港 建設等에 集中 使用하려 한다는 것은 完全히 地方自治 精神을 크게 逆行하는 것이기에 우리 郡民은 더욱 反對하는 것입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油類關聯 特別消費稅가 目的稅로 轉換되었을 境遇 內國稅에서 除外되어 內國稅의 13.27%를 차지하는 地方交付稅가 減少되어 交付稅의 依存도가 높은 地方自治團體들의 財政에 決定的인 影響을 줄 것은 明若觀火한 일입니다.

이로 因해 自治團體 支援費는 2,987億원이 줄어 들게 되고, 平昌郡의 境遇 93年度 一般會計 豫算에서 地方交付稅가 차지한 比重은 全體豫算 409억1,700만원의 43%水準인 175億6,100萬원 이며,

油類關聯消費稅가 目的稅로 될 境遇 13億원정도의 財源이 줄어들게 되어 가뜩이나 財政 與件이 脆弱한 平昌郡의 境遇 投資財源 確保에 相當한 苦楚를 겪을뿐만 아니라 郡民을 爲한 各種 福祉施策은 물론 地域開發事業도 추진할수 없게 될 것이고,

平昌地域을 비롯한 江原道の 경우 落後된 地域開發의 面貌를 一新케 하기 爲해 特別法 制定으로 오히려 國庫支援 擴大가 切實함에도 이처럼 交付稅가 大幅줄어들면 江原道는 버림받는 地域으로 轉落할 可能性이 높고, 地方自治가 實施된지 2年이 지난 지금, 地域開發에 對한 住民들의 欲求가 噴出되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結果를 招來하여 中央政府에 對한 不信이 漸增할 憂慮가 있다고 보아

特別消費稅를 目的稅로 轉換하는 것보다 國 . 公債發行, 稅率調整 등으로 財源을 마련하여 社會間接施設 擴充方案을 講究하고 不足한 地方財政을 돕기 爲해 交付되는 特別消費稅는 存置할 것을 代案으로 提示하며 特別消費稅를 目的稅로 轉換하려는 中央政府 方針을 즉각 撤回하여 卽것을 6萬 平昌郡民의 뜻을 모아 平昌郡議會 全體 議員은 強力히 促求 建議하는 바입니다.

## 陳情書 處理結果 回信

# 진 정 요 지 서

접 수 일	1993 년 6 월 3 일	진 정 번 호	3
주 소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4번지		
성 명	권 태 운		
소 관 위 원 회			
건 명	골재(모래) 수급 및 하천골재(모래) 채취허가 등록에 관한 진정서 (질의서)		

진 정 요 지 ( 1. 이유및 경과 2. 요구사항 )

- 근래 전국적으로 골재량 부족으로 건설현장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됨.
- 현재 평창군은 오대천과 평창강 지역의 일부에 골재채취 할수 있도록 고시하여 대행업자에게 입찰 기회를 주어 대행업체를 선정 하였으나 금일 현재까지 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 타 지역에서 소량을 수급하고 있는 실정임.
- 평창군 관내에서 골재 수급이 전혀 아니되는 상황이라 군청에 질의한즉 현재까지 하천에 골재가 쌓여 채취가능하여 예상량을 입찰하였다는 답이 있었음.
- 하천골재채취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골재가 퇴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골재채취를 할수 있는 골재량이 없이 대행업자를 선정함은 어떤 이유인지
- 하천에 골재채취량이 없이도 대행업체(자)를 선정한 것은 모종의 특혜로 주어진 것인지의 여부
- 현재 대행업체(자)로 지정된 업체(자)가 하천골재는 생산하지 않고 마사토를 물세척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 대행업체(자)로 등록할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평 창 군

우 232-800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0374) 32-2011~18 / 전송 (0374) 33-6356

문서번호 기획 13131 - 430

시행일자 1993. 6. 22 (3년)

발음 평창군의회회장

참조 사무과장

제목 질의서처리의견통보

1. 평의회 제62호('93. 6. 5)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전부면 하전부리 124번지 권태운이 질의한 골재(모래) 수급및 하천골재(모래) 채취허가등에 관한 처리 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의견 1부. 끝.

평 창 군



# 질 의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질의1) 하천골재 채취의 입찰을 고시한다 함은

- 가. 입찰고시된 량 만큼의 골재가 퇴적되어있는 상태에서 지역이 고시되고 법적 절차에 의하여 대행업체(자)를 선정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 나. 위의 방법에 의한다면 골재채취를 할수있는 골재량도 없이 대행업체(자)를 미리 먼저 선정함은 어떠한 이유로 한것인지

( 의 견 )

- 골재채취를 영위코자하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5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 선정고시후 평창군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을경우 채취가 가능하며
- 우리군의 민수용공급은 대형(위탁직영)체제로 부존량 및 채취 가능량에 의거 고시 입찰하나, 다만 하천의 경사및 현지어건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급하고 있음

(질의2) 하천에 쌓여있는 골재 채취량이 없이도 대행업체(자)를 먼저 선정할수 있다 하여도 골재량이없는 현상태에서와 채취량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는 그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군에서 수입상에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되며 이는 군청자체의 수지가 아닌 군민등 대다수 수혜자에게도 많은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내용이 대행업체(자)에 대한 모종의 특혜로 주어진것인지의 여부

( 의 견 )

- 대행채취의 경우 사용료등의 징수는 골재부존량 채취량에 관계없이 반출증에 의거 골재가 반출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므로 군민등 수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으며 대행업체 또한 평창군과 단가 계약된 채취료만 받으므로 어떠한 특혜가 주어진다는것은 있을수 없음

(질의3) 현재 대행업체(자)로 지정된 업체(자)가 하천골재는 생산하지 않고 마사토를 물세척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는것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의 견 )

- 진부면 하진부리 김일세는 '92. 11. 16자로 산림법에 의거 토사석 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 골재 채취법 적용대상은 아니나 전설골재용으로 공급한다면 반출지를 현지 확인 조사하여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할 계획임.

(질의4) 대행업체(자)로 등록할수있는 적법한 법적 절차를 질의 하오니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 견 )

- 대행골재 채취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관할도지사에게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필하거나 동법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91. 12. 14 일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골재채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93. 12. 13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후는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필하여야만 골재채취 허가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또한 대행채취업체의 선정은 위 자격자불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자와 단가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이루어짐.

— < '92-'93 郡政主要事業場 > —

現地確認結果處理意見及向後計劃

平 昌 郡

평 창 군

우 232-800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0374) 32-2011~18 / 전송 (0374) 33-6356

문서번호 기획 13131 - 443

시행일자 1993. 6. 28 (3년)

반응 평창군의회 의장

참조 사무과장

제목 '93군정주요사업처리의견및향후계획통보

1. 평의회 제60호('93. 5. 31)의 판권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불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붙임 : '93군정주요사업 처리의견 및 향후계획1부. 끝.

평 창 군



# '93 郡 政 主 要 事 業 處 理 意 見 及 向 後 計 劃

(평창읍)

室 課 別	事 業 名	檢 討 意 見	處 理 意 見 及 向 後 計 劃
<p>새마을 과</p>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회관 진입 로 포장공사</li>   <li>○ 상리4반 교량 가설(현안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완공부분 마무리 바람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 8,000천원</li> <li>· 미시공부분 마무리</li>   <li>· '93새마을사업이 기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사업이 불가하며</li> <li>· '94년도 새마을사업 책정시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반영토록 강구 하겠습니다.</li> </ul>

# '93 郡 政 主 要 事 業 處 理 意 見 및 向 後 計 劃

(미탄면)

室 課 別	事 業 名	檢 討 意 見	處 理 意 見  및 向 後 計 劃
지역경 제과	○ 광산지역 개발 사업	. 도로포장및 소하천 경비 - 위치:미탄면 을치 리 - 사업비:132,000천 원 - 사업내용 도로포장:105m 소하천경비:900m	. 측량 및설계: '93. 6. 20 . 착 공 예 정: '93. 7. 5 . 준 공 예 정: '93. 11. 30
새마을 과	○ 창2리 절터 농 로 포장		. 향후 시공시 무질시공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겠음.
축산과	○ 송어양식장 여 과시설(침전지) 설치	. '92년도 원복수산 송어양식장 여과시 설(침전지)설치후 현재까지 방치, . 하천수질오염 심각, 대책이 요구됨	. 환경관리 부서의 시설물(오염 방지시설)준공검사 절차이행 추구 . 시설물의 정상운영 수시지도 (군, 읍면합동)

# '93 郡 政 主 要 事 業 處 理 意 見 及 向 後 計 劃

(방림면)

室 課 別	事 業 名	檢 討 意 見	處 理 意 見 及 向 後 計 劃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개량저장고 신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절차 관계로 착공지연, 조기완공토록 추진이 요구됨</li> <li>- 현 농협창고 철거</li> <li>- 일부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상황</li> <li>- 도로점용허가 접수(정선국도유지) : '93. 6. 1</li> <li>- 개량저장고 건축허가 접수 : '93. 6. 10</li> <li>- 입찰공고 : '93. 6. 11</li> <li>- 착공예정 : '93. 6. 25</li> <li>- 준공예정 : '93. 12. 30</li> </ul>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촌6리 주차장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 필요</li> <li>· 농수산부 승인 여부에 따라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부 승인시</li> <li>- 기존 부지에 신설</li> <li>· 계촌복지회관(출장소) 뒷편 공유지에 설치 검토</li> </ul>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림 ~ 안흥간 국도 확포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스 입구전 공터를 이용 신규노선으로 연결</li> <li>· 기존 반출도로와 국도를 연결한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 1. 19진정서 접수</li> <li>· '93. 1. 26진정서 전달 및 회신</li> <li>- 국토관리청, 민원인</li> <li>· '93. 1. 30진정서 전달에 따른 회신</li> <li>- 지하통로 위쪽 기존도로에 연결하여 진입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회신</li> <li>· '93. 5. 20 기존도로와 연결하였으나 경사가 심하여 차량통과 지남</li> <li>· '93. 6. 28 국토관리청과 재협의</li> </ul>

室課別	事業名	檢討意見	處理意見 및 向後計劃
새마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촌시가지 정비사업('91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벽 균열된부분 보수완료</li> <li>- 기간 : '93. 5. 24~5. 26</li> <li>- 시공회사 : 신우건설(주)</li> <li>- 정비내용 : 응벽 보수및 도수로 정비</li> </ul>

# '93 郡 政 主 要 事 業 處 理 意 見 및 向 後 計 劃

(대화면)

室 課 別	事 業 名	檢 討 意 見	處 理 意 見 및 向 後 計 劃
새마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 실내체육관 부지매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비부족등 행정 내부사항 조속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족예산 확보 : 110,000천원 (제1회추경)</li> <li>· '93. 6. 30까지 매매계약 체결, 대금지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6리 교량 가설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대기초 시공으로 붕괴위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사시 암반발굴없이 시공 하였으나 확대기초 시공으로 설계변경 없이도 완벽한 시공이 될것으로 사료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1,4리 농로 포장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을 추진하는 구간내 소규모 구조물(소교량)을 1경간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시공중이나 앞으로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방선에 맞추어 완벽한 교량가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음.</li> </ul>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1 ~ 3리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 5. 11~5. 20까지 내무부 주관으로 군도 승격노선 실태조사시 군도승격 노선으로선정 도에 신청 전국적으로 군도승격 노선대상 물량이 많아 신청이 보류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중앙부서의 계획수립시 군도승격 반영에 적극대처 하겠음</li> </ul>

# '93 郡 政 主 要 事 業 處 理 意 見 및 向 後 計 劃

(용평면)

室 課 別	事 業 名	檢 討 意 見	處 理 意 見  및 向 後 計 劃
<p>새마을 과</p> <p>도시과</p>	<p>○ 장평1리 체육 공원 조성및 복지회관 피로 연장 설치</p>		<p>· '93년도 50,000천원을 투자하여 체육공원을 조성중에 있으며</p> <p>· 복지회관 피로연장은 '92년도에 기 설치하여 이용중에 있음</p> <p>· 용평면 장평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 변경승인을 득하여 취락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p> <p>· 도시계획, 도로개설문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사업이 아니므로 현단계에서는 취락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것이 타당하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각종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p>
<p>새마을 과</p>	<p>○ 장평2리 농로 포장</p>		<p>· 도로 가장자리 나무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향후 모든 포장사업장에 대하여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 하겠음</p>
<p>축산과</p>	<p>○ 대관령 한우고 기 시범판매</p>	<p>· 주변 마무리(석축, 포장)와 처리장 불결로 악취발생 및</p>	<p>· 석축 미완공부분 년내추가시공</p> <p>- 사업량 : 연장 13m</p> <p>- 높 이 : 3m</p>

室課別	事業名	檢討意見	處理意見 및 向後計劃
새마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승복 기념관 청소년 수련장 정비공사</li>   <li>○ 이목정 교량가 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해충(파리, 모기 등)서식</li> <li>· 조속한 시일내에 주변시설 마무리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시급함</li>   <li>·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쓰레기장설치</li> <li>· 포장노면 요철 가장자리 마무리등의 완벽한 시공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예산:25,000천원(제2회 추가경정예산확보)</li> <li>· 오물처리장 퇴적물 처리시설 설치</li> <li>- 내용 : 분뇨, 내장의 유기질 비료화 시설</li> <li>- 소요예산:33,000천원(제2회 추가경정예산확보)</li> <li>· '92년도 부터 '94년까지 3년간 도비340,000천원을 투자하여 년차별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음</li> <li>· '92년도에 150,000천원, '93년도에 50,000천원등 현재까지 200,000천원을 투자하여 진입로포장 500m, 소교량 1개소를 가설 하였고</li> <li>· 쓰레기장 설치 문제는 '9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조치 하겠음</li> <li>· 사업장 선정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선정하였으며 마을진입로 미개설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반영토록 하겠음.</li> </ul>

室課別	事 業 名	檢 討 意 見	處 理 意 見  및  向 後 計 劃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작목 시범 단지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R대비 좋은사업으로 평가되며 관계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시공자의 정실시공이 요구되며</li> <li>· 사업시행상 변경을 요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 조기 완공되도록 관계부서의 각별한 관심제고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술 축적된 분야는 국내업자시공, 개척대상인 유리온실 시공은 첨단유리온실 시공업체인 화란 달샘사 시공</li> <li>· 공사감독및 감리자의 시행상 설계변경 요청시 적극검토 시행</li> </ul>
산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톱밥 생산공장 시범단지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 산주의 자율경영 활성화및 협업체 자립기반 구축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 산주의 자율경영 활성화</li> <li>· 협업체 자립기반 구축</li> <li>· 폐잔재및 소경재의 효율적 활용으로 산주의 소득향상</li> <li>· 양질의 유기성 비료제조 공급</li> <li>· 톱밥발효 돈 사육 사료공급</li> </ul>

# '93 郡 政 主 要 事 業 處 理 意 見 및 向 後 計 劃

(진부면)

室 課 別	事 業 名	檢 討 意 見	處 理 意 見 및 向 後 計 劃
새마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문리 마을길 포장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에 소요되는 레미콘 및 와이어메쉬 자재는 관급으로 일괄신청하여 사업장별로 포설 되었음</li> </ul>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정택지 조성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내 분양완료 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완공 시기는 '93년말로 계획하고 있으며 분양은 5월 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단가 사정중에 있으므로 6월중순에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7월초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인바</li> <li>· 분양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공기내 분양은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됨</li> <li>· 감정가가 투자비보다 낮을경우 적자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평가 결과 총 감정가격이 투자비를 상회하여 문제가 없음</li> </ul> </li> <li>· 3단으로 조성된 택지 최상단층(5m)을 낮추는 설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부면 번영회로 부터 건의가 있어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추진코자 계획중임..</li> </ul> </li> </ul> </li> </ul>

邑面別	事業名	檢討意見	處理意見 및 向後計劃
산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정택지 조성 뒷편 산림훼손 허가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택지 조성으로 간주되며 금후 철거 한 산림복구 요구됨</li> <li>· 허가지역내 마사토 일부가 골재로 사용 된다는 여론이 있으 므로 철거한 지도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토채취로 생성된 평탄지는 나무심기로 산림복구 계획</li> <li>· 토사채취로 허가받은 지역이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각호외 1에 해당하는 허가제한 지역 일 경우에는 허가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나</li> <li>· 본 허가지역은 상기 허가제한 지역이 아니므로 채취한 토사 에 대한 용도제한은 두지 않는 사항임</li> </ul>

# '93 郡 政 主 要 事 業 處 理 意 見 및 向 後 計 劃

(도암면)

邑面別	事 業 名	檢 討 意 見	處 理 意 見 및 向 後 計 劃
새마을 과	○ 횡계 송천정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석 보수</li> <li>- 기 간 : '93. 5. 18~5. 22</li> <li>- 시 공 자 : 일산건설(주)</li> <li>- 정비내용 : 들출된 경계석 재보수 완료</li> <li>. 고수부지 미포장부분 포장</li> <li>- '94년도 당초예산 확보</li> </ul>
환경보 호과	○ 농촌 오수처리 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현황</li> <li>- 분임관리관 지정 : '93. 5. 14 환경보호과장 ⇒ 읍 면장</li> <li>- 전담관리자 지정 군 : 환경관리계장 읍.면 : 사회, 복지계장</li> <li>. 1일1회이상 가동상태 점검</li> <li>. 처리장 수질검사 실시</li> <li>- 시기 : 2월 1회</li> <li>- 내용 : 유입수 및 방류수 대비 적정처리 여부</li> <li>. 향후계획</li> <li>- 전담관리자(기능직) 배치 시기 : '94년부터 인원 : 2기당 1명 내용 : 환경분야 기능소지자 로 선발관리 및 운영 분야 전담</li> </ul>

邑面別	事業名	檢討意見	處理意見 및 向後計劃
산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트렌스 산림복구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기전 완료 미정으로 토사유출및 산사태가 우려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위임 : '92. 9. 1국제트렌스 대표 고질석</li> <li>· 복구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92. 11. 16 통일공영(주) (동결기로 중지)</li> <li>- 2차 : '93. 4. 10 통일동영(주)</li> </ul> </li> <li>· 행정조치(복구 철저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 4. 16, '93. 4. 30, '93. 6. 4</li> </ul> </li> <li>※ 토사유출 및 산사태가 우려됨으로 복구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행치 않을시 대집행 복구코자 함</li> </ul>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계진입로 확포장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예산 과다로 당해년도 추진이 곤란하며</li> <li>· 고속도로와 연계한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할 사안인 관계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실시할 계획임</li> </ul>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산 ~ 싸리재 군도확.포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확포장 : 1.3km</li> <li>· 토지소유분 : 도암 차항리 산146-5 1필지5,165㎡</li> <li>· 소유자 : 박광노</li> <li>· '90년도 도로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 6. 7까지 승락 동의키로 협의 ⇒ 소유자 박광노</li> <li>· '93. 7. 20일한 잔여공사분 마무리 계획</li> </ul>

邑面別	事業名	檢討意見	處理意見 및 向後計劃
재무과	○ 유천출장소 신 축	<p>공사시 토지주(박광 노)승락없이 공사시 행 ⇒ 토지주 소유권 주장</p> <p>· 공사중단 - 토지사용승락 불 용</p> <p>· 협의요청 - 서면 및 방문으로 수차례 협의 요청 하였으나 승락불 용</p> <p>· 현재 식재되어있는 대형 전나무는 울타 리 좌.우경관을 고 려하여 살리고 그외나무는 제거, 키가작은 수종으로 조경토록 검토하겠 음</p> <p>· 스투브 콘크리트 균 열부분은 감독공무 원으로 하여금 누수 방지토록 철저한 감 독및 레미콘강도 분 석토록 지시</p>	<p>· '93제2회 추경예산에 조경예산 확보</p> <p>- 청사주변 경관조성에 힘쓰겠 음.</p> <p>· 콘크리트 강도 및 성분을 검사 토록하여 사전 하자발생에 따 른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기 발생부분은 방수처리 보수 하겠음</p>

邑面別	事業名	檢討意見	處理意見 및 向後計劃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계상수도 배수지 관리실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화염소의 투입량은 일일검사 항목에 해당되어 일일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정 잔류 염소량 0.2~0.4PPM을 유지하고 있음</li> <li>·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유입으로 현재 삼양축산(주)와 한일산업(주)공동 부담으로 지하수(1,500T/D)를 개발중에 있으며 7월중으로 완공할 예정임</li> <li>· 이와는 별도로 진부.도암 광역화 상수도 시설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li> <li>· 상수도 취, 배수장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은 읍면은 물론 군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상수도 시설이 청결히 유지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li> </ul>